

1. 개정이유

- 문화유산 매매업 관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문화유산 지정 시 출처
· 취득경위 등 증빙자료 검증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(안 제52조제2항)

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
허가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문화유산매매업 현황
및 통계 자료 활용

나. 문화유산 매매·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(안 제55조제4항)

-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매매장부 보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
하여 형사상 공소시효 및 민사상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 취득기간을
고려하여 매매정보 및 취득경위 등 투명성 확보

다. 문화유산매매업자 행정처분(안 별표5)

-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매매장부에 매매·교환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
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화유산매매
업자의 불성실 신고를 예방하고 매매장부의 투명성 확보

라. 문화유산의 취득 경위 검증 강화(안 별지 제5호서식)

- 문화유산 지정 요청 시 소유자의 취득 경위 증빙자료 및 취득경위에 대한 시·도지사의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소유자의 취득경위 소명 강화 및 시도지사(위원회)의 검토기능 강화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2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허가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55조제4항 중 “5년”을 “10년”으로 한다.

별표 5 제2호바목에 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) 문화유산매매장부에 문화유산 거래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	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--	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

별지 제5호서식 제11호 중 “문화유산 소유자(단체)”를 “문화유산”으로, “자료”를 “자료(소유자의 취득경위 증빙자료, 취득경위에 대한 시·도 지사의 검토 결과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2조(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) ① (생략)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,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.	제52조(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하며, 허가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(생략) 제55조(문화유산 매매·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) ① ~ ③ (생략) ④ 문화유산매매업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유산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<u>5년</u> 동안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유산매매장부를 파기	③ (현행과 같음) 제55조(문화유산 매매·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년</u> ----- ----- -----

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.

-----.